

사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7호, 99.3. 2)

1. 심사경과

- 가. 1999. 3. 2 최정경의원의 4인 발의
- 나. 1999. 3. 2 의회운영위원회 회부
- 다. 1999. 3. 16 제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서면)

가. 제안이유

사천시의회공인조례중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문구를 일부 개정함.

나. 주요골자

○ [별표1] [별표2] [별표3] [별표4]를 [별표]로 하고 개별양식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임.

3. 검토의견의 요지(서면)

사천시의회의 청인과 직인의 규격을 불합리하게 여러 표에 나열한 것을 한 표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형식, 자구에도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질의자 없음.

5. 토론요지 : 토론자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소수의견 없음)